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목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주택건설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1항, 제4조 등)
○ 임대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149㎡(매입임대 85㎡)이하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함(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1,000분의 3 ⇒ 1,000분의 1.5(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1.5 공포)
- 임대주택활성화 등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도 재정과)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05. 3. 24 - 2005. 4. 14) 결과 : 다른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5조중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8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를 "재산세" 로 한다.

제21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 과세표준액" 으로 한다.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각각 "재산세" 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재산세와 종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8조 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32조 제목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으로 하고, 본문 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며,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독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독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며,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을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으로 하며, "오지개발 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하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시행령」"으로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으로 하고,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으로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으로 하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하고,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 ---------- ----------재산세 ---------- ---------- ---------- ---------- 재산세----------.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 ----------주택---------- ---------- ----------재산세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현 행	개 정 안
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생략)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생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재산세----------.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및 주택---------- 3. (현행과 같음.)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 득 후 재산세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3(생략)	1.~3(현행과 같음.)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

현 행	개 정 안
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

현 행	개 정 안
	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 ---------- ---------- ---------- ---------- ---------- ---------- ----------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 행	개 정 안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 ---------- ---------- ----------1,000분의 1.5----------.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 ----------.
제16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 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제16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 ---------- ---------- ---------- ---------- ---------- ----------재산세 ----------. ②---------- ---------- ---------- ---------- ---------- ---------- ----------도시계획

현 행	개 정 안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세를 면제한다.---------- ---------- ----------.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 ---------- -----재산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재산세---------- ---------- ---------- ----------

현 행	개 정 안
우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 ---------- ---------- ----------재산세 ---------- ----------.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현 행	개 정 안
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재산세----------.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 ---------- ----------재산세---------- ---------- ---------- ----------.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1. ---------- ---------- ------ ----------재산세------ ----------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2. ---------- ---------- ----------재산세---- -------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	3. ---------- ----------

현 행	개 정 안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재산세 ---------- ---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4 . ---------- - - - - - - - - - - - - ---------- ---------- ----------재산세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현행과 같음.)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을 설치 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기 위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 ---------- ----------재산세 ----------.
(생략)	(현행과 같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 ----------재산세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 ---------- ----------재산세-----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	②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재산세----------.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32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